

·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21(화)

· 장 소 | 건국대 법학과 도서관 5층 국제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사회의 활동의 현황점검 및 실천적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21(화)

· 장 소 | 건국대 법학과 도서관 5층 국제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차 례 ●

### 토론회 일정

#### 주 제 1 : 일제시대과거청산의 과제 및 해결방안

- 발 제1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업무추진 현황과 과제 / 0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성규
- 발 제2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 1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정운현
- 발 제3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현황과 문제점 / 1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정승교
- 발 제4 : 일제시대과거청산의 과제 및 해결방안 / 21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

#### 토 론1 :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의 의미와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과제 / 35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봉태
- 토 론2 : '과거사법' 의 현황과 과제 / 37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은식
- 토 론3 : 일제시대 과거사 청산의 과제 / 47  
방송에서의 일제 청산 논의-〈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mbc프로듀서 정길화

#### 주제 2 :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과제

- 발 제1 : 노근리학살사건 진상규명활동의 성과와 과제 / 05  
노른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정구도
- 발 제2 :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과제 / 8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조훈
- 발 제3 :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청산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규명 방향 / 94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 김무용
- 발 제4 :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의 현황과 과제 / 108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운영위원장, 서울대사회학과 교수 정근식

# 주제. 1

## 일제시대 과거사청산의 과제 및 해결방안

토 론1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김득중

토 론2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 충북대책위 운여위원장 박만순

토 론3 : mbc프로듀서 이채훈

### 주제 3 : 국가권력에의한 인권침해사건에대한 진상규명활동의 현황

발 제1 : 민주화보상심의위 활동의 현황과 과제 / 1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 전문위원 이영재

발 제2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현황과 과제 / 140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획과장 이선희

발 제3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현황 / 152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 염규홍

발 제4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의 현황 / 15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이명춘

발 제5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관련 활동의 과제 및 해결방안 / 160

전북대 법과대학 김희수

발 제6 : 사법부의 과거사청산 과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 17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토 론1 :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 발전위원회 위원 곽한왕

토 론2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토 론3 : 과거사 청산 활동을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kbs프로듀서 장해랑

### 종합토론

발 제1 : 과거청산활동의 현실과 방향 / 194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서우영

토 론2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

토 론3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이춘열

## 위원회 업무추진 현황과 과제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박 성 규 •

### ● 위원회의 설립경위와 목적

#### ▶ 법 제정 및 설립경위

- 2004년 2월 국회 의결(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2004년 9월 법률, 시행령 공포 시행
- 2004년 11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2005년 3월 최초 진상조사 개시

#### ▶ 위원회의 목적

- 법 제정의 목적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 위원회의 주요 기능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2.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3.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위령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 위원회의 조직현황

- 소속 : 국무총리
- 위원 : 9인 이내(당연직 3명 포함)
- 사무국 : 4개 과 101명(공무원 50명/ 민간 조사관 51명)
- 시도 실무위원회 : 당해 시도 지사 소속

#### ▶ 위원회 활동기간

- 최초 진상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2년 이내 조사 완료(2007년 3월)
- 기간 연장 : 조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유보고, 6개월씩 2회 까지 연장 가능

## ● 분야별 업무추진 현황

### ▶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의 추진

- 조사신청 접수 : 52건
- 자체 진상조사 개시 : 36건(신청건 34건/ 직권조사 2건)
- 금년중 완료 예정 : 21건
- 자체 진상조사 개시한 36건의 목록
  - BC급 전범 진상조사
  - 시베리아 억류조선인 포로문제 진상조사
  -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포로에 관한 진상조사
  - 대동아 성전대비와 7인의 한국인 특공대
  - 소록도 한센병 환자의 강제노역 진상조사
  -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 일본 우토로 지역 주민의 도일배경 진상조사
  -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 진상조사
  - 사할린 가미시스카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조사
  - 사할린 2중징용 피해 진상조사
  - 거문도 군사시설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 진상조사
  - 제주도 군사시설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 진상조사(직권)
  -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조사
  - 한국으로 송환된 7,600여구 유골소재 진상조사
  -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자 명부 및 합사경위 진상조사
  - 니시소노기군 소장 매화장 인가증 기재 조선인 사망자 진상조사
  - 이키섬 조선인 귀국선 해난사고 및 희생자 유골문제 진상조사
  - 타이헤이마루 사건 진상조사
  - 홋카이도 무로랑시 고쇼지 유골 진상조사
  - 일본군 위안부 추정명단 진상조사
  - 남방파견보국대로서 해남도로 강제연행된 조선인에 관한 조사
  - 사할린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조사
  - 홋카이도 후카가와시 다카도마리공동묘지의 조선인유골발굴 유족조사
  - 홋카이도 비바이시 죠코지 유골 진상조사
  -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 건설에 종사한 조선인 희생자 유골조사
  - 홋카이도 네무로시 다이도쿠지의 유골에 대한 진상조사
  - 홋카이도 미츠비시 비바이탄광 츠도갱에 방치되어 있는 조선인 희생자 유골조사

- 해남도로 연행된 조선인 성노예에 대한 진상조사
- 홋카이도 토마리무라 카야누마 탄광 전북출신 213명의 피해조사
- 미즈호 학살사건
- 기슈광산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
- 전시하 일본지역의 노무위안소와 조선인 노무위안부 실태조사
- 마쓰시로 대본영을 비롯한 일본전역의 지하호에 대한 조사
- 에오로시 발전소 강제동원 조선인노동자 행방불명에 대한 조사
- 아소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관련 진상조사(직권)

### ▶ 강제동원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 2006.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 유형별 피해신고접수 현황

접수 건수	피해내용별					동원유형별			
	사 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무사귀환		군 인	군 속	노무자	위안부
				사망	생존				
221,264	31,569	9,346	52,393	75,404	52,552	37,107	26,424	157,376	357

- 군인, 군속은 40%가 무자료이고, 노무자는 85%가 무자료

- 위원회는 현재까지 2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30,778건을 심의 · 의결

※ 피해판정의 유형별 현황(2006. 9월말 현재)

계	피해내용별					동원유형별			
	사 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무사귀환		군 인	군 속	노무자	위안부
				사망	생존				
26,710	6,324	131	243	10,920	9,092	7,220	9,300	10,175	15

- 최근 3개월 처리건중 군인, 군속은 3.1%가 무자료이고 노무자는 71%가 무자료

- 최근 월별로 3,500여건이 처리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의 처리 예상은 37,000여건

### ▶ 유골문제 협의 및 수습, 봉환의 추진

- 한일 정부간 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국장급 회의 4회, 실무급회의 3회)
- 일본정부, 전일본 불교계 등을 통해 유골실태조사를 2007년 5월 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이며 진행과정에 유골 관련 정보 한국에 전달(2006. 6월까지 1,669위 전달)
- 일본측의 실태조사 결과, 유골소재가 확인된 사찰 등에 대한 현장실지조사 실시(2006. 9월 까지 한일공동 2회, 일본단독 1회)
- 일본 후생노동성 관리하에 있는 유텐지 한국인(남한적) 유골 704위중 유족이 확인된 유골(현재 242위)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봉환 추진키로 하고 봉환시기와 방법, 유족의사 확인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중이며, 2006. 6월까지 유족확인 유골중 142위에 대한 상세정보 전달 받음
- 희생자 유족의 해외 추도순례사업은 올해말에 3회, 신년초에 2회 실시 목표로 추진중이며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12월 중순에 싸이판, 필리핀, 팔라우 등지에 20명씩 순례 예정

### ▶ 자료수집, 분석

-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 13종(피징용사망자연명부/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소위 조선인징용자에 관한 명부/일제하피징용자명부/군인군속명부/유수명부/해군군속자명부/임시군인군속계/병적전시명부/군속선원명표/공원명표/병상일지/부로명표)에 대하여 동원사실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근거기록(약칭 '위인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6종의 새로운 명부기록을 수집, 분석후 위인정 자료로 채택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명부, 사진, 유품 등)을 수집 평가하여 보상을 실시중임(현재까지 총 92점)

### ● 향후과제, 전망

#### ▶ 진상조사 추진 및 보고서 작성

- 미완료된 건에 대하여 작업일정을 구체화하고 중간발표회 등을 통해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고 작업진도 확인
-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추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형식으로 추진 예정

#### ▶ 피해신고의 처리

- 군인, 군속은 유자료분의 처리에 중점을 두되 인우보증 확보, 생존자 구술 녹취 등의 작업을 병행
- 노무자는 위인정자료의 추가개발, 일본후생연금명부의 확보, 동행자명부 활용 및 인우보증서 활용 등을 통해 10만여 명에 달하는 무자료자 판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
- 군 위안부는 사망/행불자에 대한 처리방침이 결정되는 데로 일괄 판정처리 예정

### ▶ 유골 실태조사 및 봉환

- 유골 실태조사 및 현장 실지조사는 한일정부간 정기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일본내 시민단체(진상규명 네트워크)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며 한일 불교계의 협조분위기를 이끌어내어 속도감 있게 추진
- 유골봉환은 유족찾기 및 유족의사 확인 등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본정부와의 구체사항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유텐지 유골부터 봉환 추진

### ▶ 추도, 위령사업

- 위령공간(위령묘역/위령탑/위령공원 등)은 예산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데로 조성추진, 천안 망향의 동산 등 검토
- 사료관/박물관 건립은 예산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데로 건립추진, 용산공원내 역사박물관, 서대문 독립공원, 천안 독립기념관 등 검토
- 해외 추도순례사업은 한일정부 공동의 예산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예산의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유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지원법 제정에 따른 대응문제

- 진상규명 차원의 위원회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되, 지원 심의기구와의 기능상 연계성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상의 낭비 요인 제거
- 지원대상 희생자에 대한 피해판정을 우선시하여 업무 조정 및 재배치 필요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정운현 ·

### 1. 서 론

해방 후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양대 과제는 완전한 민족국가 수립과 함께 인적, 물적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는 이같은 양대 과제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동족상잔 끝에 국토는 반쪽으로 나뉘어 온전한 통일국가 수립에 실패했으며, 일제잔재 청산 역시 국민적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2차대전 종전 후 승전국에 대해 전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전범재판을 실시했다. 미국이 중심이 돼 진행한 '도쿄재판'과 유럽에서 진행된 '뉴렌베르크재판'이 그것이다. 이들과는 별개로 종전을 통해 독립한 여러 피지배국가에서는 민족반역자 처단이 개별 국가단위로 자체 진행됐다. 이같은 역사청산은 한 시대를 청산하고 새시대를 열고자하는 인류사적 보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위시해 다수 국가들이 '협력자'를 처단하였는데, 이는 현대사에서 과거사 청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제국주의 지배 하에 있던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민족반역자 처단이 진행됐다. 중국의 경우 '한간(漢奸)재판'이 그것인데, '한간'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민족반역자에 대한 통칭이다. (\* 여기서 '중국'은 종전 후 대만의 국민당정부와 본토의 중공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한간을 청산하는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당정부와 중공정부가 약간 달랐으나 양 진영이 나름으로 친일파 청산을 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편 일제지배 하에 있었던 이 땅에서도 해방 후 친일청산 문제가 남과 북에서 각각 진행됐다. 그러나 남과 북에서 진행된 친일파 청산은 그 양태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사회(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재산몰수, 선거권 제한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남한의 경우 제헌국회에서 반민법을 제정,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 청산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반민특위의 중도 와해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각국의 과거사 청산 결과를 두고 완결성,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유럽이나 중국, 심지어 북한 등에서 이같은 논란은 학술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친일파 청산 문제가 정파간의 정쟁은 물론 학술적 영역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아직도 친일파 청산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이는 친일파 청산이 제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 2. 역사적 배경 및 현황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법 제정을 통해 구성한 반민특위는 이듬해 1월초부터 활동을 개시한 이후 그해 8월말로 활동을 중단했다. 친일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는 권력집단의 저항에 부닥친 결과다. 이후 해방 60년이 되도록 이 문제는 몇몇 개인연구자들의 책상 위에서만 맴돌았을 뿐 사회적 현안으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다룰 만큼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숙돼 있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다보니 역사학계는 물론 정치학계, 사회학계 등에서조차 변변한 논문 한 편 내지 못했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다.

그러다가 친일청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것은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해서다. 경복궁 뜰 안에 있던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이 땅에 잔존한 친일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독부 건물 철거가 물적 청산이었다면 인적, 제도적 청산에 대한 관심도 뒤이어 생겨났다. 이를 전후하여 개인 연구자나 민간 연구소 등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또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로 국가보훈처가 친일전력 독립유공 포상자에 대한 공훈 취소 등을 단행하면서 이런 논의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친일청산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낸 계기는 무엇보다도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찾기'가 아니었나 싶다. 90년대 중반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가 이완용 증손의 땅찾기를 특종 보도한 이후 친일청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반세기 넘게 잠자고 있던 민족정기에 불을 당긴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도 한 몫을 했다. 국회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비 5억원을 삭감하자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불과 11일만에 5억원을 모금해내는 일대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같은 국민적 호응은 결국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8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는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 나머지 1년 반만에 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곧바로 ‘누더기법’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채 시행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2005년 1월말 개정됐다.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그 해 5월 31일자로 ‘제2의 반민특위’ 랄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가 정식 출범했다. 활동기간은 4년, 전체 소속원은 113명이다.

반민규명위의 활동은 해방 60년이 넘도록 역사적 과제로 남아온 일제하 민족반역자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활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청산작업은 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한 까닭으로 대인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민족반역자를 처단한 다른 나라의 경우나 과거 반민특위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즉 2차대전 종전 직후에 민족반역자를 처단한 나라들의 경우 대상자들을 처형하거나 유죄판결을 통해 징역, 공민권정지 등 신체형과 함께 재산몰수(전부 혹은 일부) 등 재산형을 가한 바 있다. 이는 반민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반민규명위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상자가 대부분이 사망한 까닭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반민규명위의 청산작업은 역사적, 기록적, 문헌적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반민규명위의 활동과 성과는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선정기준 아래 관련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민규명위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외에 걸쳐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광범위한 자료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간 성과도 적지 않았다.

반민규명위의 활동은 단순히 대상자들의 행적조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연구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배태되었고, 또 일제 통치하에서 그들이 어떻게 육성되었으며, 그들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는 무엇인지를 학술적으로 밝혀내는 일까지도 업무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같은 연구작업은 학계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관련 학계의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까닭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몫까지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다 충실히 보고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민규명위는 조사국 산하에 1, 2, 3, 4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다. 각 과별로는 다시 몇 개의 분야(팀)로 나눠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료출신으로서 매국조약에 가담한 자도 있고, 또 경찰 출신으로서 중추원참의를 지낸 자도 있다. 이럴 경우 관료-매국팀, 경찰-자문기구팀 간에 상호 조율작업은 필수적이며, 정보와 관련자료의 공유도 절실한 상황이다.

조사작업은 대상시기를 3시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제1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19년 3·1만세의거까지, 제2시기는 1919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까지, 제3시기는 1937년부터 해

방 때까지이다. 이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구분으로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 시대구분이기도 하다. 다만 전체시기에 걸쳐 활동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가 비중있게 활동한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작업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반민족행위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기초조사를 한 후 모집단을 그려내고 다시 그 속에서 자료와 구체적인 행적이 입증되는 사람을 찾아내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1인위원회에서 내리고 있다.

지난 6월말 반민규명위는 제1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120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제1기 (1904~1919)에 주도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선정한 것으로, 120명 중에는 매국·수작자 27명, 중추원 관련자 21명, 일진회 관련자 27명을 비롯해 의병 탄압·진압에 앞장 선 자, 한일합병을 적극 지지·청원·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39명은 연고가 파악돼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선정사실을 통지하였고, 나머지 81명의 경우는 연고를 파악할 수 없어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의거해 관보 등에 공고하였다.

반민법 등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대상자들이 거의 사망한 데다 당시 자료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명예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족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기 조사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한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실지로 이의신청을 받아온 결과 몇 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해온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이는 제1기 대상자들이 주로 거물급들이어서 친일행적을 입증할 자료가 풍부한데다 또 이른바 ‘당연범’들이 다수 포함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의 경우 향후 제2, 제3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 3. 한계점, 향후 활동방향

반민규명위가 활동을 개시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전반적으로 원활한 조사작업이 진행중이며, 큰 애로점은 없어 보인다. 과거사 청산 관련 타 위원회에서 부려워할 정도로 고급 전문인력이 다수 확보돼 있으며, 특별히 드러난 행정적인 문제점(예산 등)도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현황과 문제점

몇 가지의 한계점은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첫째, '4년 학시기구'라는 점이다.** 길게 보면 100년 전의 역사를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명해 밝혀낸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그간 연구가 태부족한 분야를 다룬다는 것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자료의 한계, 증언자의 부족 등이 효율적이고 충분한 조사(연구)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1차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6개월이라는 기간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위원회로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그 나름의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 관련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반민특위의 좌절로 인해 친일세력들이 재등장하면서 관련 학계의 친일파 연구가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자료관리(보관, 출간 등)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친일 관련 자료는 <관보>나 일간신문 등 공간(公刊)된 자료 이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관련자료 조사를 위해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찾아나서는 형국마저 빚어지고 있다. 두 나라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료 입수가 용이한 편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여전히 당국이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어 자료입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지역 친일파 조사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 법적 한계점, 우선 법이 모든 사항을 망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반민규명위 설치근거인 특별법 역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당초 원안에서는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도 대상으로 다루었으나 최종 합의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다보니 이런 경우 특별법 제2조 20항('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의 원용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법 조문 속의 '현저한' '적극적인' 등의 용어의 경우 그 해석문제를 놓고도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다.

그러나 같은 한계점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민규명위는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해방 60년만에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탄생한 위원회인만큼 구성원들이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남은 활동기간동안 반민규명위는 더욱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한 새시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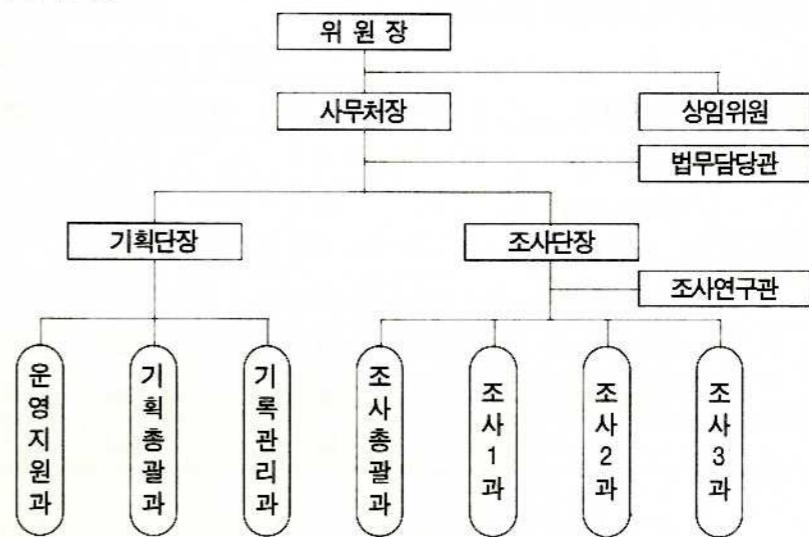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총괄과장 정 숭 교

### 1. 위원회 설립 및 활동 경과

#### ○ 위원회 설립 일지

- 2005. 2.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
- 2005. 12. 29 특별법 공포 시행
- 2006. 2. 1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준비단 발족
- 2006. 6. 29 특별법 시행령 공포 시행
- 2006. 7. 13 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대통령 임명(위원회 발족)
- 2006. 7. 24 제1차 위원전체회의
- 2006. 8. 18 위원회 현판식
- 2006. 9. 11 신규재용자 발령
- 2006. 9. 22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 ○ 위원회 사무처 현황



## ○ 정원

합계	국가직			지자체 파견	계약직	사무보조원
	소계	파견	자체채용			
정원	104	71	45	26	8	4
미파견	14	9	8	1	3	1
현재	90	62	37	25	5	3
						20

## 2. 조사활동 현황

### ○ 업무흐름

- ① 조사대상자 선정
- ② 가계도 작성
- ③ 지적 전산망을 활용한 재산조사
- ④ 친일재산조사
- ⑤ 조사개시결정
- ⑥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친일행적 조사 및 증빙자료 확보
- ⑦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⑧ 국가귀속결정

### ○ 11월 현재 성과

- 조사개시결정 : 57건, 194필지, 753,043㎡

차수	의결일	안건수	필지수	면적(㎡)
1	2006.7.24	1	1	26,900
2	2006.8.18	11	40	312,626
3	2006.9.8	4	10	22,372
4	2006.9.22	8	23	9,440
5	2006.10.13	21	40	231,726
6	2006.10.13	12	69	169,979
계		57	194	753,043

-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진 대상자 : -12명(이완용 이재극 민영희 이병길 권태환 송종현 권중현 송병준 이지용 이창훈 조중용 고희경) - 을사오적 정미칠적 수작자 순으로 진행

## 3. 문제점 및 대안 모색

### ○ 대상자 선정 문제

- 기본적인 대상자 - 진상규명법 제2조 제6호~제9호
  - 6호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8호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 본위원회 결정 대상
  - '작위를 거부 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제외
  -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한 자' 추가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본위원회의 구체적 행동은 개별적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개시결정
  -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선행되어야
  - 진상규명위원회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어야

### ○ 행적조사 문제

- 기본적인 행적조사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용할 수 있음
- 독자적 행적 조사의 필요성
  - 법률적 증빙자료 확보
  - 친일재산과의 대가성 문제 입증
  - 상대측 반대논리 대비

### ○ 친일재산 조사 문제

- 친일재산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받은 재산'
-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추정
- 동산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 ○ 긴급하게 제기된 문제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재산 처분 사태
- 이론상 대안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현실적 난점
- 신속한 보전처분의 필요성
- 대안 - 처분가능한 토지부터 신속한 조사개시 결정을 통한 보전처분
- 추후 모든 토지에 대한 조사 및 국가귀속 결정

## 일제시대 과거사청산 활동의 과제 및 해결방안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 한 용

## 1. 머리말

한국 사회 현안 가운데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그 만큼 쟁점 또한 격렬 활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사청산' 문제이다. 그간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칠의 자료집이 나올 만큼 학술 또는 대중 언술로서 많이 거론되어 왔다<sup>1)</sup>. 또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상당 수 발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의 내용이나 의의를 다시 논하는 것은 오히려 사족이거나 논의를 뒤로 돌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사청산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검토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도 있다.

멀리는 '동학농민혁명' 시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기까지의 '과거사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하면서, '입법화 운동' 단계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운동이 관련 기구의 결성(위원회)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구가 본래의 입법 목적에 얼마나 충실히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 소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특정 과거사 사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우리 자신, 우리 사회의 질적 성숙과 연동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과거사 청산 관련 문제 제기는 애초 개별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상호 연관되고 통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거사 청산'의 사안들은 개별 입법화된 것부터 통합입법화된 것까지 다양하다.

백년 가까운 기간 동안 특정한 역사 시점과 구조 속에서 발생한 각각의 '과거사 청산과제'를 하나의 맥락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워, 각 입법운동도 개별화되어 진행되거나 그 사안이 갖는 의미도 개별 분절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안목을 넓혀서 보면 과거사 청산과제들은 각각의 사안들이 분절고립화해 존재하

1) 여기서 과거사 청산의 개념은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加害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책임주체가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김동춘, 12쪽).

기 보다는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사안들이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가, 왜 이제 와서 거의 동시적으로 제기되었는가 하는 시대 배경 또한 적잖이 공통의 역사·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거사 청산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시점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과거사 청산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별 과거사 청산이 역사과정 속에서 갖는 연속성이나 현 시기 과거사 청산 운동의 유기적 측면을 고려해 그 역사적 의의가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은 현재의 우리이고 그 성과와 한계는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과거사 청산에 관한 전체조망과 분야별 심화토론으로 기획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최근 시민사회(또는 관련 피해자)의 요구와 국가의 입법화에 따른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과거사 관련 입법과 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과거사 관련 입법

-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② 1945년 8·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이념 대립과 민간인 학살 관련 법안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③ 권위주의 정권 아래 빚어진 인권 유린관련 법안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 현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 ④ 위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거사 관련 통합 법안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가운데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식민 지배 과정에서 빚어진 과거사 관련 입법 가운데 동학농민혁

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제외하자면, 나머지 네 개의 과거사 관련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식민지 병합이라는 상황 아래서 주권을 상실하고 책임 있는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초래된 것' 관관련이 있다<sup>2)</sup>. 강제동원·일본군(강제)위안부문제는 별도로 논의될 사안이므로 여기서는 친일진상규명활동과 그 관련 조치(예컨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활동)에 국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친일과거사 청산활동 또한 다른 과거사 청산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친일인명사전편찬과 기타 시민들의 자발적인 친일과거사 청산운동)과 국가기구(반민진상규명위원회, 재산조사위원회)를 통한 것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요하게 검토된 것은 국가기구 차원의 활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시대 과거사 청산활동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인 만큼 학술적 측면보다는 실제적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 2. 일제시대 과거사 청산의 의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식민지 피억압시기 겪어야 했던 민족구성원의 고통, 그 실태와 규모, 피해와 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외적으로 인근 침략국가에 대해 응분의 사과와 보상·배상의 청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3)</sup>. 이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대외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민족 성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친 친일세력들에 대한 일련의 청산 과정 또한 건국을 위한 최소한의 통과의례이며, 침략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우리 내부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은 정체의 선택 차원이 아닌 당위의 의무라 하겠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아래 친일파 청산은 물론 일제 식민지 지배에 다른 민중의 피해 사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조처조차 없었다는 점은 안타까움을 넘어 경이로울 정도이다. 더구나 쿠데타라는 불법성과 친일이라는 부적절한 전력을 지닌 집단이 한일회담에 나서면서, 한일과거사 청산은 해결 대신 문제의 불씨만 더욱 키워온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친일문제의 경우 친일행적자가 독립유공자로 국가 묘역에 묻히고, 친일행적자에 대한 무분별한 기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매국형 친일파의 후손마저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고 당당하게 소송을 걸어오는 오늘의 상황이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른바 광복60년을 맞이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신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한일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는 현실은, 과거사란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묻어둘 수록 더욱 깊게 깊어간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 김동춘, 17쪽.

3) 김동춘, 17쪽.

따라서 식민지 과거사법은 이승만정권 아래 정권이 식민지 과거사 청산을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러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방기해 온 책임을 다시 국가에 묻고 국가가 이제라도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안이다.

한편 식민지과거사법은 식민지라는 특정 시기의 과거사 청산과 '민족문제'라는 의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과거사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하다. 일제 식민지 지배는 분명 '민족적 억압'이라는 형태를 띠었다. 민족이 실재하는가 하는 학문적 공방을 떠나,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사회진화론이나 우생학에 근거해 식민지 강점과 민족차별을 정당화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일 노동에 있어서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친 이유,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학대받은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차별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종차별이나 인권 유린이라는 '보편의 범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 이에는 '민족차별과 식민지 수탈과 탄압' 이란 특수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분명 짚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제국주의 가해국이 금을 그은 인권의 경계 안에 우리 스스로 머무르려는 경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친일청산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일청산의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지점은 이완용 등과 같은 매국형 친일파나 밀정 같은 부류가 아니라 1937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 친일세력들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 1937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는 전시총동원 체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 수탈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였다. 이 시기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인에게 일체의 재산과 목숨마저 바치라고 외친 친일세력들은 결코 '반민족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며, 이들의 논리와 행위는 분명 전범 내지 전쟁협력행위자로서 그 이전의 (매국형) 친일세력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일본 파시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참여한 조선인 협력자들에 대해 그 실상과 도덕적·역사적 책임을 확인하는 것은, 식민지 억압을 당한 우리 내부에도 파시즘과 침략 전쟁에 협력한 부류(공범)가 있었음을 반성하고 이를 청산하자는 성찰이깃 들어 있다(이런 점에서 남비식 반일주의와 구별된다). 따라서 친일청산 등을 민족·조국 등 특수한 가치에 따른 의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친일문제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 친일 청산은 반민족 행위라는 의제와 반민주주의(인권유린이나 전쟁과 같은 반인권 행위)가 연동되면서 진행되어야 할 성격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예비적 반성의 성격을 띤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 (1) 위원회 개요와 활동

##### 1) 조직 개요

###### □ 특별법 및 시행령 제·개정

- 특별법 제정 '04. 03. 22, 개정 '05. 1. 27, 개정 '06. 4. 28
- 시행령 제정 '04. 10. 29, 개정 '05. 5. 31, 개정 '06. 4. 06

###### □ 설치근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위원회 설치목적

○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 □ 위원회 기능(활동)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사료편찬 및 사료관 건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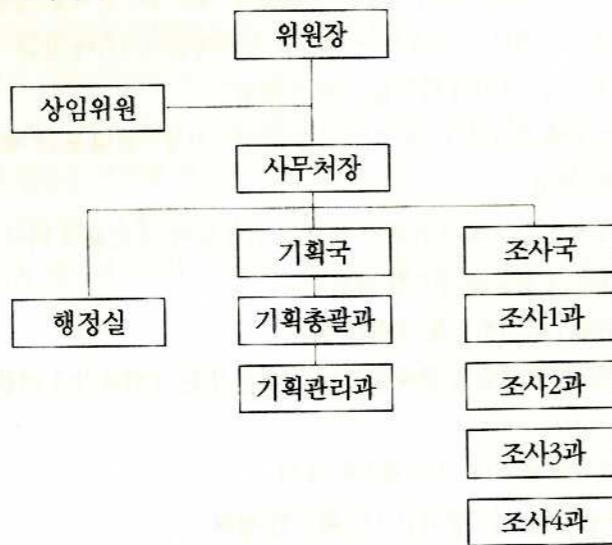
#### (참고) 반민족행위의 범주 법 조항

제2조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 · 지원병 ·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돋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현납한 행위
15. 판사 · 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 고문 ·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현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 고문 ·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파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 위원회 구성과 조직체계



#### □ 위원회 구성

- 성격 : 대통령 소속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1인-차관급)
- 활동기간 :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6개월 연장 가능)
- 위원 : 11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11인을 대통령 일괄임명)
- 임기 : 위원회 활동 기간과 같음

#### □ 사무기구

- 기구 : 1처 2국 1실 6과 113명

- 사무처장 - 대통령 임명, 소속직원 - 위원장 임명

#### ○ 행정실

-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 · 조정 / · 위원회의 조직 · 정원의 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 ·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기획총괄과

- 조사 · 연구 · 자료수집 및 홍보업무에 대한 종합 기획 · 조정 / · 민원 및 각종 제보의 접수 · 증거자료 열람청구 처리 / ·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 · 조사보고서 작성 및 국회 관련 업무

#### ○ 기록관리과

-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 · 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 · 관리
-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시스템 공유
- 사료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 ○ 조사1과

- 국권침해 조약 관련 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 판사, 검사, 사법관리, 현병, 군인,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의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조사2과

- 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밀정 · 경찰의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 조사3과

- 경제기구 · 친일경제단체의 간부, 군수품 제조업자, 정치 · 사회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의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교육 · 학술 분야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 조사4과

- 언론 · 종교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문학 · 예술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 자료수집 및 조사 · 연구

\* 현재 조사와 조서 작성은 분야별 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실제 운용은 기구별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 2) 활동 상황

### ○ 분야별 기초 조사

- 용역형태, 인물이 아니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개괄적 조사와 입론 근거 마련

- 개인 또는 기관에 용역

### ○ 국내외 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분야별 대상자 조사와 조서 작성

### ○ 대상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11인위원회)

- 현재 109명 확정 - 매국형 친일(수작자, 중추원관련자, 1910년대까지 호라동한 주요 친일경력자 가운데서 심의 확정)

○ 연구/보고서팀을 통해 친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입론 근거 마련, 위원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정리

- 최근에 관련 팀 가동

- 국회제출 2006년도 활동보고서 준비 중

### ○ 국내·국제 학술행사 개최

- 역사학관련 학술단체간담회 개최(2월)

- 과거사청산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 개최(11월)

## 3) 문제점

### ○ 법안 자체의 문제점

- 정치적 타협의 산물.

- 특히 반민족행위에 대한 범주가 모호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다(예 2조 10호)

- 활동기간이 4년이며 연장 6개월로 너무 짧다.

### ○ 위원 구성상의 문제점

- 친일진상규명을 반대하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 ○ 관료조직적 운영의 문제점

- 한시기구로서 기동성이 있는 활동이 필요하나 관료조직의 벽을 넘지 못하는 문제도.

### ○ 정치적 외압성을 극복하는 문제

- 친일청산문제를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집단에 의해 정치 쟁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조직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 ○ 친일문제에 대한 국가기구와 민간의 인식 차이와 혼란 가능성

- 친일문제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와 대중적 합의 부재에 따른 혼란 발생 가능성

(예) 위원회의 반민족행위자 선정 기준과 대상자와 민간기구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사전 수록대상자 사이의 상위

(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선정 대상과 일치 여부

-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지 않은 여타 중대한 친일부역행위자에 대해 역으로 국가가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법적 청산이 아닌 역사적 청산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대외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 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1) 제기 배경

○ 1990년대 중반 이완용 증손자가 서울지역(아현동) 이완용의 땅을 소송으로 되찾아가면서 사회 문제화함. 친일파재산환수를 위한 입법화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불발.

○ 친일파 후손들의 재판 승소 사례는 '역사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비등.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친일파거사청산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됨. 특히 송병준 등 매국형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의 '조상땅찾기'가 소송으로 번지고 법률상 하자가 없는 한 땅을 되찾아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끓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됨.

○ 민족문제연구소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최초로 친일파의 재산 소유 실태와 소송 사례 그리고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을 법적 타당성 등과 관련한 보고서가 최초로 나와 입법화의 근거가 됨.(??'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 〈참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행정자치부가 2004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일본인 토지 소유현황'에 포함된 10만2467필지(3743만평)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을사조약이나 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매국형 친일파' 434명 가운데 130명의 이름을 땅 주인과 대조해 13명이 122필지 2만1162m<sup>2</sup>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2) 특히 '매국노' 송병준과 이완용이 일제 때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만 94만4천여평의 땅을 소유했으며,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60)씨가 지난해 4월 재산반환 소송을 냈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터(13만3천평·시가 3천억원대) 외에 경기 고양시 등에 79만8923평, 이완용은 경기 광주

시와 여주군 등에 14만598평을 소유했던 것을 확인

3)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 90년 이전에는 1건, 90년대에 23건, 2000년 이후 7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 일제 때 훈장이나 은사금을 받은 거두급 친일파 윤덕영·이해창·이기용·남정철 등 4명의 후손이 땅찾기 소송을 벌였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

4)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에 벌인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친일파 166명의 후손들이 110만평의 토지를 찾았감. 166명은 매국형 친일파 11명과 중추원 21명, 기타 134명 등이다. 이 가운데 매국형 친일파 및 중추원 32명의 후손들이 찾은 땅은 24만평임이 드러남.

(예) 이기용(자작) 후손 충남에서 11만2천여평

송병준 후손 - 충북에서 420평

이근호('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후손- 경북·충북에서 2300여평

이용구(일진회 회장) 후손은 경기도에서 7200여평

김갑순(중추원 참의) 후손은 강원도에서 1천여평을 각각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 (2) 위원회의 업무와 활동

### 1) 설치 연혁

○ 2005년 2월 24일 국회의원 169명이 서명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대표 발의자 최용규의원)

○ 2005년 12월 8일 국회 의결.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이 친일파 후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거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거처분 신청 부동산은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희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1600평(10필지, 5277m<sup>2</sup>)이며, 이 땅들은 1997~2004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을 내 승소한 것들임)

○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 제정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6년 8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족

### 2) 위원회 조직과 업무

#### ○ 위원회의 업무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 친일재산 여부는 9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친일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경우는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참고〉 귀속대상관련 법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뒤·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5조-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 ○ 위원회의 활동 기간

4년에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 위원장 1인(김창국)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 사무 기구

상임위원 2인

기획조정실장 - 기획총괄과, 대외협력과, 자료관리과

조사단장 - 조사기획관(1인) / 법무담당관(1인) /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조사4과, 조사5과

#### 3) 문제점

##### ○ 조사 과정상의 문제점

- 시간이 많이 흘러 재산 취득 과정을 밝혀줄 자료 수집이 쉽지 않다.
- 재산 취득 형성시기와 취득 과정 등을 밝히기 어렵다.

##### ○ 조사요원의 부족

- 조사관, 관련 전문연구자 부족. 현재 우선 조사대상자 400여명만 하더라도 재판까지 대비해 만반의 조사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려면

##### ○ 후손들의 반발과 소송에 따른 처리 지연

- 국가 귀속 결정이 날 때마다 후손들이 반발할 것이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임

##### ○ 전매 등 소유권 양도되었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 문제

-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한다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 우려.

##### ○ 어디까지 소급할 것인가

- 무한정 소급할 수 없다는 점. 이미 대부분의 토지는 처분되었다.

##### ○ 국가에 귀속된 재산의 처리 문제- 역사정의의 실현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

##### ○ 반민규명위원회의 선정자와 재산조사위 선정자의 불일치 문제 발생 가능성

#### 4. 맷음말

오늘의 친일 청산운동은 반민특위의 법적 청산과 달리 역사적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진실의 복원만이 아니라,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면서 남긴 현재의 부(負)의 유산을 동시에 포착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는 정략적 차원의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친일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 그 후손들에게는 고통스런 일이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과는 관계가 없다.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사실 규명과 그것이 끼친 역사적 영향을 해명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역사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기회를 주어 민족사의 성원으

로 거듭나게 하자는 데 있다. 우리 또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여 한 사회를 병들게 한 방조자였음을 반성하고, 21세기 전환기의 한민족이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이념과 실천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친일 청산은 우리 사회가 진실 반성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에 이미 지난 일을 이제 들추어내서 어찌자는 것인가는 의견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친일 청산은 잘못된 역사는 50년이 지나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를 잊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하나의 모범 선례로 보아야 한다.

과거사 청산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측에서 전개될 위험이 있으며, 국론 분열을 일으켜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거사 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을 제외하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실상 없다. 과거사법 대부분이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실에 대한 규명은 반성의 객관적 기초를 제공한다. 반성은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진실 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적 풍토를 확산하고, 반성과 용서를 통해 사회의 통합을 이루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자는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며, 상극이 아닌 상생의 길이다.

한편 친일청산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우리 내부의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계기가 될 것이다. 불행했던 한일과거사에 대한 청산은 일본의 근본적인 자기반성과 함께 우리 내부의 일제 식민잔재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일청산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의 공동체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친일청산은 20세기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 그리고 그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이러한 비극이 21세기에는 결코 되풀이 되지 않게끔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 규범을 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 후세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젊은 세대들이 평화와 공존의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친일(청산)문제는 제국주의의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협력자들에 대한 반성이며, 과거 권력이 악용한 남비식 반일내셔널리즘과 구별된다. 즉 민족반역자라는 민족 국가의 지평 안에 닫혀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와 인종 차별) 그리고 전쟁이라는 인류보편사의 시각에서 그 근원적인 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미 지난 일을 이제 들추어내서 어찌자는 것인가는 의견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친일 청산은 잘못된 역사는 50년이 지나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를 잊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하나의 모범 선례로 보아야 한다. 이 또한 친일청산의 현재적 의의의 하나라 하겠다.

##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의 의미와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봉태

### 1. 한국내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의 의미에 대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를 청산함으로써 사회 민주화를 공고히 하는데 궁극적 의미가 있다.

특히 일제 시대와 관련하여서는 친일 세력이 분단과 이에 이은 전쟁을 통해 제대로 청산이 되지 못한 관계로 한국 사회의 정의를 왜곡하여 왔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존재해 왔다.

그리하여 참여정부 들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및 재산의 환수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은 다른 과거사 청산과 같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 청산이 냉전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도 한일간에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 구조를 정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현재는 물론 미래지향적 과제로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은 성공이 되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일본 및 동아시아에 확산되어 가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제 시대 과거 청산이 일본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정권의 주도하에서 이루고 있는 것으로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수구 언론의 비협조적 보도 태도도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일제 피해자 구제 문제의 경우에도 일제 피해자 문제가 가진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단순한 위로금의 지급 문제로 정부에 의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과거사법’의 현황과 과제

### 2. 현재 일제 시대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과제

우선 일제 피해자 문제의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문제이다.

사실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간에는 역사인식의 일치도 보지 못한 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침해되어 왔다.

최근 한일협정관련 문서가 공개됨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통해 들어난 책임을 이행하는 피해자 대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통일 이후 및 일본과의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리와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여야 할 부분은 생존자에 대한 조속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제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천 문제이다. 현재 해외에 방치된 유골의 조사 및 수습을 위해 한일 양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 협의는 1965년 당시 냉전에 의해 강요된 관계 정상화를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북한과 일본간에 이루어지는 수교과정이 정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진상규명작업은 현재 일본의 시민사회의 협조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는바 구체적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연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측에 대한 보도를 잘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제 시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특히 마지막으로 한 마디하고 싶은 것은 과거사 청산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의 국민적 이해 확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이 과거사 중에서도 일제 시대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일본의 위협이 상존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작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여 동아시아 평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일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자측의 정당한 보상을 견인해 냄을 통해 경제적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 은 식

### 1. 개념의 정의

최근 언론에서는 참여정부를 일컬어 소위 ‘과거사 공화국’ 또는 ‘위원회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많은 인력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부처별 과거사 위원회도 활동 중이다. 대통령 소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각종의 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청산의 중요성에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노무현대통령의 과거청산 관련 발언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사법”的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어떤 법률을 “과거사법”으로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과거사법”이 단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문제의 해결방향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이 과거의 사건을 다룬다 할지라도 현재 진행형의 과거사인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법조계에서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 근현대사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역사학계가 담당해야 할 문제인지, 현존하는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 다룰 범주인지에 대한 구분 또한 모호하다.

필자는 지난 제14대부터 제17대인 현재까지 발의되어 제정된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관련 법률의 심의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과거사법”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과거사법”이라 함은 “과거의 특수한 사건에 대해 가해책임과 피해사실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보상·배상·지원을 통하여 피해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통칭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거의 특수한 사건”이란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우리사회 전체 혹은 집단적인 피해를 유발시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거나 사회 공동체성을 저해한 사건을 가리킨다.

“가해책임과 피해사실의 진상을 규명하고”는 우리사회 전체 혹은 집단적인 피해를 유발시킨 근원<sup>1)</sup>이 어디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양태나 규모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말한다. “명예회복과 보상·배상·지원을 통하여 피해의 원상회복”이라 함은 “과거의 특수한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을 받거나 재산, 생명,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의 면죄, 복직, 복학 등을 통한 원상회복과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그리고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 주거, 생계, 생활 등의 지원을 말한다.

## 2. 과거사법의 현황

문민정부가 출범한 제14대 국회부터 현 참여정부인 제17대 국회까지 제정된 “과거사법”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대적인 분류와 성격적인 분류로 나누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각 국회 회기별 “과거사법”의 처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표1〉 국회 회기별 과거사법 입법현황<sup>3)</sup>

( )안 일자는 본회의 가결일자

	제14대 국회 (1992.5.30~1996.5.29)	제15대 국회 (1996.5.30~2000.5.29)	제16대 국회 (2000.5.30~2004.5.29)	제17대 국회 (2004.5.30~현재)
처 리 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 에관한법률안(1993.2.23)</li> <li>·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1993.5.18)</li> <li>· 거창사건관련자의명예회복 에관한특별조치법안 (1995.12.18)</li> <li>· 현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 효등에관한특례법안 (1995.12.19)</li> </ul> <p>(총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1999.12.16)</li> <li>·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2004.2.13)</li> <li>·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법안(1999.12.28)</li> <li>·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2.9)</li> </ul> <p>(총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 에관한특별법안(2004.2.9)</li> <li>·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2004.3.2)</li> <li>·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안(2004.1.8)</li> <li>·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2005.6.29)</li> <li>·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보상에관한법률안 (2003.12.29)</li> <li>·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2001.12.21)</li> <li>· 한국전쟁증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외군복무인정등 에관한법률안(2004.3.2)</li> </ul> <p>(총8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2004.3.2)</li> <li>·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환수에관한특별법안 (2005.12.8)</li> <li>·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 한특별법안(2005.5.3)</li> <li>·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 법안(2005.5.3)</li> </ul> <p>(총4건)</p>

2) 어떤 법을 “과거사법”으로 규정할지는 “II. 과거사법의 개념과 정의” 참조

3) 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은 노태우대통령 임기중인 1990.7.14 제13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1997.11.17 제15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개정법률안은 1999.12.28 제15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동재의원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였다. (확인 필요)

4) 2003.12.29 통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명되었다.

1) 김동춘은 인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하여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흰을 강조했다.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과거청산 운동 백서 1부, 한국학술정보(주) 40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6대국회와 제17대국회에 들어서 “과거사법”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현재 17대국회에는 더욱 많은 “과거사법”들이 발의되어 심의되고 있다.  
 <표4 참조>

정권별 “과거사법”의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5)</sup>.

<표2> 정권별 “과거사법” 처리 건수

단위: 건

	문민정부 (김영삼정권 1993.2.25~)	국민의 정부 (김대중정권 1998.2.25~)	참여정부 (노무현정권 2003.2.25~)
처리건수	4	4	1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들어 통과된 과거사법이 숫자적으로 그 이전 정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치는 참여정부를 ‘과거사 공화국’ 또는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3> “과거사법”의 성격별 분류

구분	법률명
징벌형 과거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민족행위자처벌법</li> <li>· 현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li> <li>·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li> <li>·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2005.7.11 발의법안)</li> </ul>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형 과거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li> <li>·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li> <li>·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li> <li>·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li> <li>·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li> <li>·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li> <li>·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li> <li>·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li> <li>·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li> </ul>

5)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기준과 정권의 회기 기준이 다르므로 처리 건수에서 차이를 갖는다.

국가보상 · 배상 · 지원형 과거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li>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li> <li>·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li> <li>·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li> <li>·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li> <li>·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li> <li>·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li> <li>· 민주화운동관련지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li> <li>·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법률안</li> </ul>
기념 · 학술형 과거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념관법</li> <li>·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li> <li>· 전쟁기념사업회법</li> <li>· 고구려역사재단지원법안</li> <li>· 동북아역사재단법안</li> </ul>

‘징벌형 과거사법’은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형 과거사법’은 ‘과거의 특수한 사건’에서 발생한 재산, 생명, 신체상의 피해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보상 · 배상 · 지원형 과거사법’은 ‘과거의 특수한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자나 희생자의 유족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의 예우로서 각종의 급부와 생활지원, 선양사업을 통해 국가나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양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의할 수 있다.

‘기념 · 학술형 과거사법’은 기념사업, 추모사업, 학술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념관이나 재단설립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정의할 수 있다.

(표4) 현재 발의되어 있는 과거사법 현황

법안명	발의년월일	발의자해당	상임위	비고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2004.6.21	장복심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05.8.4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05.10.13	장경수의원 대표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사할린동포 영주국과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5.12.30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2005.8.12	원희룡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06.10.13	최용규의원 대표	발의정무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6.10.20	정부 발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6.9.25	정부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 3. 해외의 과거사법

해외에서도 많은 “과거사법”들이 심의되거나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sup>6)</sup>.

#### 1)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청산

아르헨티나에서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하여 군사정권이 붕괴되어 1993년 12월에 문민 정권이 성립되었다. 알폰신 대통령은 군사정권이 제정한 자기사면법을 취소하여 군사정권의 책임자를 폐전 책임과 인권 침해의 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와 동시에 실종자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nunca mas(never again)’라는 보고서를 내어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실종자조사위원회는 약 3만명 정도 파악된 인권침해 희생자 중에서 8,960명의 실종자를 확정하였다. 1999년에 군수뇌부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자기비판하게 되었고 육군사령과 발사장군은 상관이 인권 침해를 명령하더라도 부하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 규율의 관념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

6) 과거청산입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우루과이에서도 1973년부터 1985년까지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1984년에 민주화 교섭이 있었을 때,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를 불문에 불이기로 약속되었고, 1986년에는 사면법(통칭 종지부법)을 제정하였다. 국민은 겨우 손에 넣은 민주주의를 쿠데타의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책임을 불문에 불이는 선택을 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정권이 1973년부터 1988년까지 군사지배를 하였고 1990년에 민정이관이 이루어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과거의 인권침해를 모두 면책하는 자기사면법을 공포했다. 민정이관 후 집권을 한 중도좌파 정권은 사면법이 적용되는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하지 않으나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결과는 레티히 보고서로 공표되었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정보를 재판소에 송부하였으나 재판소는 자기사면법을 적용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국가보상화해공사가 설립되어 실종자의 유해조사, 인권침해의 진상조사, 희생자 가족의 보상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80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 1992년 종결까지 약 75,000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1992년 화평협정의 교섭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가 합의되어 1993년에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보고서가 공표된 며칠 후에 사면법을 통과시켜 가해자의 소추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엘살바도르의 진상규명위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엘살바도르의 화평교섭과정에는 유엔이 중개자로서 참가하였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엔의 위원회로서 설치되어 그 인원, 활동자금 등이 유엔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둘째 진상규명위원회는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에 그 이름을 공표하는 과거의 예가 없는 일을 하였다. 셋째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과거청산의 두드러진 특징은 군부가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군부의 압력 또는 쿠데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해자를 거의 면책한 점이다. 특히 가해자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군인들은 전쟁 상태에 있어서 적을 죽였을 뿐이라고 하여 가해자가 반성하지는 않고 있다.

####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청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과거청산은 1994년 처음으로 전 인종 참가의 선거가 치러지고 국민통일정부가 성립되어 1995년 7월에 ‘국민의 통일과 화해 추진법(TRC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파르헤이트의 죄를 인도에 대한 죄이며 내전하의 전쟁범죄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라서 설치된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아파르헤이트 체제하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①사실조사 ②가해자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겨우 사면을 내린다 ③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안한다고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7) 서승.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가테러리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배상에 관한 연구-한국과 대만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그 특징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해자가 사실을 고백할 경우 사면해 주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진실을 통한 화해라는 만델라의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투투 대주교를 의장으로 하는 17명의 위원이 있으며 인권침해, 사면, 보상회복의 3개 소위원회가 있어서 앞의 두 위원회가 관계자로부터 증언 청취 및 증거수집을 하고 사실을 확정한다 음 그 사실의 확정에 기초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진실과 화해의 추구라는 방식은 내전이 종결되어 독재체제가 붕괴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특히 칠레에 있어서의 화해방식을 따랐다고 한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특징은 철저한 공개성에 있으며 가해자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면을 신청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증언청취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을 통해서 철저한 사실의 고백과 사과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sup>8)</sup>.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의 화해란 가해자를 사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 지배계급인 백인들에게 보복도 제제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아파르헤이트의 종결이 ANC(아프리카 민족회의)의 군사적인 승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범재판과 같이 한편이 다른 한편을 심판함으로써 과거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양보에 의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5) 과거청산방향 국가간 비교

지 역	진상규명	사죄	처벌	배상	명예회복	비 고
아르헨티나	○	○	×	×	△	군인에 대한 사면법 제정
우루과이	×	×	×	×	×	군인에 대한 사면법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에서 패배
파테말라	×	×	×	×	×	카톨릭에 의한 대규모진상조사
엘살바도르	○	×	×	×	×	유엔에 의한 조사단의 직접조사
칠레	○	×	×	○	△	인에 대한 사면, 일부 정치범 미석방, 진실과 화해위원회 설립
남아프리카	○	○	×	○	○	칠레의 경우를 참고함

8) 서승, 앞의 논문, 1999  
9) 앞의 2004.12.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쪽

#### 4. 한국사회의 과제

한국의 근현대사는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해방정국의 혼란과 좌우의 간의 갈등, 한국 전쟁과 분단,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14대~17국회에서 많은 “과거사법”들이 심의되고 제정되었고 앞으로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률들은 역사적, 법적, 사회적 판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왔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앞서의 분석을 통해 향후 “과거사법”에 대해 다음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각 위원회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출범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규모를 합하면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적절한 예산의 배분,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내 과거사법 담당관 지정)

##### 둘째, 기구의 통합 및 재조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단일기구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친일진상규명위원회와 재산조사위원회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올 것이다.

##### 셋째, 보상·배상·지원의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로서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거나 향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의 양태, 규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지난 16대에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희생사건 가운데 거창사건에 대해 보상과 생활지원을 추가하여 ‘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004.3.2 통과되었으나 2004.3.25 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국회로 반송되었고 임기만료로 폐안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현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당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했던 고건총리는 거창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보상을 할 경우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sup>10)</sup>.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찾아야 한

10) 한겨레 2004.3.23 「거창사건 특별법 거부 배경」

## 일제시대 과거사 청산의 과제

방송에서의 일제 청산 논의 -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MBC 프로듀서 정길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피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법률안들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차원의 보상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피해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차원의 보상은 공권력 피해로 인한 우선의 물질적 궁핍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 차후에는 관련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왜소화시켜버리고, 나아가 과거청산 작업 전체의 정당성을 허물 수도 있다. (지나친 보상, 배상에 대한 요구는 상실된 정의와 인권의 회복에서 물질적 보상만을 위한 이익집단화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사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는 작업에도 큰 짐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피해의 원상회복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보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역사적 희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평가하고 지나친 피해보상 요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조치들은 지양해 나가야 하며, 관련 피해자들을 '절득할 수 있는 사회적 여론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건별 의견수렴과 협의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자문기구(민관공동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후속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획이 필요하다.

각 위원회가 최종적으로는 기념관, 사료관, 역사관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이나 재단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집행을 위해 후속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 다섯째, 과거지향에서 미래지향적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을 채록하고 기록을 정리해 나가는 일은 피해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정부주도만의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상을 밝히고 기록하는 일 자체를 하나의 교육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피해의 가족사를 후손들이 기록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학교에 협조요청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불행한 과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단지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과거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일제시대

1999-2005 7년간 100편 방송

#### 그 중 일본 관련

1. KT공작의 실체 김대중 납치사건 2000.7.16
2. 일본 커넥션, 쿠데타 정권과 '친한파' 2000.8.6
3. 반민특위 - 승자와 패자 2001.5.25
4. 3억불의 비밀 한일협정 2001.6.1
5. 6.25 일본 참전의 비밀 2001.6.22
6. 또 하나의 분단 재일동포 2001.7.6
7.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2002.2.3
8. 천황을 살려라 - 도쿄전범재판의 혹막 2002.3.3
9. 53년 만의 증언, 친일경찰 노덕술 2002.3.10
10. 반한 베트콩, 한민통의 진실 2003.2.23
11. 독립투쟁의 대부, 홍암 나철 2004.2.27
12. 만주의 친일파 2004.3.7
- 13/14. 육영수와 문세광 1부, 2부 2005.3.20/3.27
15. 끝나지 않은 비밀 프로젝트, 일본의 원폭개발 2006.6.12

#### 일제시대와 직접 관련되는 것

-3, 7, 9, 11, 12 등 5편 정도... 평균 시청률 6-7%)

cf. KBS 다큐멘터리극장(1993)

친일파, 끝나지 않은 심판 1, 2부 1993.8.8/8.22(총 64편 중)

## 2) 일제시대 과거사 청산 논의의 성과

- 1949년 반민특위 실패 후 문학예술, 학술, 언론, 제도권 기구 등으로 논의 확산
- 역사의식 제고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아무리 성기어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  
(天網恢恢 疏而不漏 · 천망회회 소이불루)
- 민족정기 선양  
“이 다음에 다시 우리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독립운동을....”(14대 광복회장 윤경빈)
- 사료발굴  
1940.2.11 기원절(일본판 개천절 일본기원 2600년) 행사 참가 조선인명부 광영록  
친일경찰 노덕술의 행적, 친일학자 이선근의 행적,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졸업앨범 사진 등  
프랑스 나치협력자 청산, 중국 국민당 및 공산당의 친일부역협력자(漢奸) 청산 과정 현지 취재

## 3) 일제시대 과거사 논의의 한계

- 전 제
- 민족해방과 광복을 주도적으로 쟁취해내지 못한 근본적 한계
- 친일 청산을 주도해낸 세력의 부재, 당시 국민여론의 미성숙
- 2차대전 후 냉전구조에 갇히면서 미국의 세계질서에 순응

## • 한 계

- 역사에 대한 냉소주의  
(소급입법, 연좌제는 사법적 질서와 안정성과 충돌)
- 상황논리와 당위론의 문제
- 정쟁 또는 정책에 대한 공격용(정적때리기)으로 변질
- ‘잘못된 첫단추론’ vs ‘실기(失機)론’
- 결과적으로 여론 분열 양상 초래

## 4) 향후 방향의 모색

### • 전 제

- 철저하게 실정법에 근거하고 법이 없을 경우 입법기관에 기초한 법치주의
- 기록, 자료 철저 조사 외 당시 정황에 대한 입체적인 고증 등 실증주의
- 친일인명사전, 활동백서, 자료관 설립 등 기록문화 제고에 집중하는 역사주의
- 포퓰리즘, 정치적 이벤트나 기존 정치세력의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는 비정치성

### • 방 안

- 3대 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정보공유와 해석의 일관성
- 3대 위원회의 활동 조건 및 성과 보장(선거 등 정치 국면에 좌우되지 않게)
- 발간 사업, 다큐멘터리 제작 등 기록문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교과과정 반영
- 일제시대 배경 문학 또는 영화 등 문예작품에서 주제의식으로 승화

## 주제. 2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과제

## 노근리학살사건 진상규명활동의 성과와 과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정 구 도 \*

### 1. 서 론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말, 참전미군에 의해 무고한 수백명의 피난민들이 잔혹하게 희생을 당한 사건이라서 혼히들 한국판 Killing Field 또는 한국판 미라이학살사건(My Lai Massacre)이라고 불리고 있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희생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이고<sup>1)</sup>,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사건중의 하나로도 평가받고 있다. 사실 노근리사건은 가해국인 미국에게는 그 진실을 가능한 한 축소해서 덮고 싶은 부끄러운 현대사의 한부분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사안을 두고 한미양국간에 '역사전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sup>2)</sup>처럼 이 사건은 한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다기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 반세기 가까이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건해결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불굴의 노력의 결과 AP통신이 1999년 9월말, 노근리사건을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한미양국은 1999년 10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1년 3개월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1년 1월 12일, 한미양국은 노근리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치고 조사보고서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양국정부가 발표한 노근리사건 진상조사결론은 진실을 축소, 왜곡한 것이었다. 이에 노근리 미군양민학살 사건대책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노근리사건진상 재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을 하였다. 그 후 노근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04년 2월 9일, '노근리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후 노근리특별법으로 약칭)'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이 노근리특별법에 근거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사실을 심사·결정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 부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1) 이만열·김윤정,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그 성격",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 정구도 편지 2003년 2월, 57~58쪽.

2) 정구도, '역경의 열매' 기고문, 국민일보, 2006년 3월 1일  
정구도, KBS1 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노근리를 둘러싼 한미 역사전쟁의 2막이 올랐다", 프레시안, 2006년 6월 1일

국무조정실, "노근리사건 진상조사 및 사후대책 설명자료", 2001년 1월, 2쪽  
국무조정실 발표자료를 보면 한미간의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과정은 매우 치열한 역사전쟁을 방불케 한다. "한국정부는 1999년 10월 국방부 김종환 총장(현 합창의장)을 진상조사반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한 이후 15개월 동안 연인원 12,700여명을 투입하여 865건의 문헌자료 검토, 144명의 일하는 현장복역 생존자, 신고자, 참고인의 증언청취, 9회에 걸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미국정부는 매릴랜드, 미주리, 캔자스 국립문서보관소 등 6개 기관에 보관된 6,25관련 자료 1000여 만건을 검색하여 노근리 주요 학습자료 490건을 한국 측에 제공하였으며, 한국정부도 전문요원을 미국에 파견 260건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했다. 미국정부는 미국전역에 있는 7,000여명의 노근리사건 관련한 국전 참전군인 등을 추적, 탐문하여 175명에 대해 6,500여 쪽에 이르는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한측 증언자 44명분과 미측 175명분의 증언록을 상호 교환하였다." 1999년 10월 진상조사가 착수된 이래 지난 7년 간 진실규명을 두고 한미간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근리사건 회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후 노근리특별위원회로 약칭)가 정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 위원회의 운영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근리사건의 개요와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활동의 성과를 간략히 검토해보고 진상 규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자 한다.

## 2. 노근리사건의 개요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희생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노근리사건'인데 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미군기에 의한 공중공격과 지상군의 공격에 의하여 피난민들이 살상을 당한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와 임계리의 주민들이 주축이 된 약 500-600명으로 추정되는 피난민들은 1950년 7월 23일, 미군의 소개령에 의해 임계리 마을과 안점에 피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7월 25일 다시 피난민들은 미군의 지시로 7월 25일 심야부터 26일 새벽까지 하가리 앞 하천변에서 노숙을 하였고, 7월 26일 날이 밝자 일부 피난민은 다시 마을로 돌아갔으나,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경부국도를 따라 남쪽을 향해 피난을 계속했다.

이들 피난민대열이 서송원리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미군의 통제로 피난민들은 경부국도에서 경부선 철길로 올라갔고, 철길을 따라 가다가 미군으로부터 짐 검색을 받았다. 이 때 미군항공기의 공중공격이 있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살상을 당하였다.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항공기의 공중공격과 미 제1기갑사단 소속 참전미군들의 사격을 피해 철길 밑의 수로나 주변의 아카시아 숲 등에 숨어 있다가 미군들에 의해 또는 미군의 공격을 피해 노근리 쌍굴에 집결하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미군들에 의해 쌍굴에 갇힌 후에도 미 지상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7월 26일 야간부터 쌍굴 속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쌍굴을 탈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 여성, 노인들은 쌍굴을 탈출하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3일간이나 계속되었다. 시체더미 뒤에 숨어 간신히 살아남은 나머지 피난민들은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쌍굴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7월 29일 오전, 쌍굴 주변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들이 노근리에서 철수하였다. 쌍굴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피난민들은 7월 29일 오후 북한군이 노근리 쌍굴에 도착함으로써 비로소 쌍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sup>3)</sup>

3) 노근리사건 회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회생자심사보고서", 2006년 3월, 51-52쪽

'노근리 학살사건'을 노근리사건특별법에서는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

## 3.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주체별 활동성과

### 3.1.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성과

#### 3.1.1. 실화소설 출간

한국전쟁 직후부터 노근리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끊임없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한 첫 시도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1960년 10월, 정은용씨(현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의 위원장)가 앞장서서 유가족 수명의 연명을 받아 미국정부가 서울에 운영하던 주한미군 소청사무소(所請事務所)에 손해배상을 소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정은용씨는 노근리사건을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도 요청했었다. 그러나 소청사무소는 60년 11월 17일, '법정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소청사무소에서는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다. 정은용씨는 1960년 12월 27일, 손해배상청구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울소청사무소의 포리백만 대위에게 보내 미국정부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미국문제를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은용씨는 1970년대 중반에 노근리사건을 주제로 중편소설을 발표했고<sup>4)</sup>, 1985년에는 문화방송에서 실시했던 6.25 특집드라마 대본공모에 응모하는 등 문학적인 방법으로 노근리사건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했다. 정은용씨는 10여년 동안 수집해온 자료와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91년 봄부터 노근리사건에 관한 장편 실화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2년 반이나 계속된 이 소설 집필작업은 끝이 나서 1994년 4월, 정은용씨가 집필한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실화소설이 출판되었다<sup>5)</sup>. 군부독재정치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회여건상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좌절되자 1970년대부터 꾸준히 문학형식을 빌어 노근리사건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이 실화소설은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들과 한국전쟁관련 사료들을 기초로 했는데 노근리사건발생 기간, 사건을 일으킨 부대명, 사건의 경위, 피해상황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밝

4) 한편, 2001년 1월 12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수세적인 전투상황 하에서 북한군의 강요에 의해 철수 중이던 미군이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지역 철길과 쌍굴 주변에서 공중공격 및 지상사격으로 수 미상의 피난민들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근리사건조사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이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라 약함), 2001. 1. 1쪽.

5) 월간지인 소설잡지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중편소설을 발표하여 관심을 통과하기도 했다.

6) 1999년 4월 15일, 필자 정은용, 도서출판 디리미디어.

혔고, 향후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 시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정은용씨의 실화소설 출간으로 내외신 언론기관에서 단편적이나마 노근리사건에 대해 보도하자 사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정은용 현 위원장이 앞장서고 노근리사건 피해자 몇 명이 가세해서 대책위원회 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과 경색된 사회분위기 때문에 생존피해자와 유족들 대다수가 대책위원회 회원 가입을 기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뜻을 같아해 1994년 6월, '노근리사건 미군 양민학살대책위원회' (이하에서는 노근리대책위로 약칭)를 정식으로 결성하여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3.1.2.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요청 진정서 제출 및 홍보활동

노근리대책위가 결성된 직후인 1994년 7월 6일, 청은용 위원장은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회생자 유족 및 부상자들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로 진정서를 이첩하고, 국방부는 다시 미8군으로 이첩했다. 그리고 미8군은 노근리사건에 책임을 회피하는 답신을 보내왔다.

1994년 11월 29일, 노근리대책위 정은용 위원장은 "노근리사건은 미군과 인민군간의 전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전투와는 무관하게 고의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박서신을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 존 월튼에게 발송했다. 1994년 11월 30일, 사건해결을 재촉구하는 서신을 김영삼 대통령, 한국 국회의 각 정당대표와 국회의장 앞으로 발송했다.

1997년 8월, 노근리대책위 정은용 위원장은 청주지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한 같은 해 12월, 법무부 중앙배상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역시 시효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노근리대책위는 1997년 9월에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 상·하원원장 앞으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sup>7</sup>. 1999년 3월에는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미국방부에 사건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으나 '남한의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해 미 육군이 개입한 증거 없음'이라는 내용을 회신 받았을 뿐이다<sup>8</sup>. 이후 대책위는 2004년 2월,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해배상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진정서를 한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미국정부와 미 상·하원에 30여 차례 보내는 등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한 노

7)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다. '노근리사건 관련자료' (99.12) 노근리사건대책단

8) 강취진 진실, 위로받지 못한 원혼' 1998.7.30일자 인권하루소식  
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학살이 자행된 당시는 북한군과 미군의 교전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전투 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행된 진혹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하였다.

9)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美軍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 韓美 NCC 활동사항 보고 자료집' (1999/11/22)

력을 계속하고 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정은용 위원장의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책을 매개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 책이 출판되자 노근리대책위 정 구도 대변인은 중앙일간지와 주간지, 외신 등에 책을 통한 사건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1994년 4월 29일 연합통신 문화면에서 처음 책을 소개되었고 이어 여러 일간지와 주간지와 외신에도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sup>10)</sup>. 그후 노근리대책위는 노근리학살 관련 기사가 상세히 실린 <조선인민보>사본을 경향신문에 제공하고 경향신문은 자사가 발행하는 뉴스메이커(1994.11.17일자)라는 주간지에서 <조선인민보>의 노근리사건 관련 기사를 전재하며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정대변인은 이처럼 새로운 문서자료들이 찾아질 때마다 내외신 기자들에게 계속 제공하였고, 언론사 기자들 중 현장취재를 원하는 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존피해자들을 연결해주어서 취재가 이루어졌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진 횟수가 200회가 족히 넘는다. 이러한 홍보활동으로 일간지, 주간지와 월간지에 이르기까지 노근리사건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될 수 있었다.

노근리대책위는 노근리사건을 방송을 통해서도 알리기 위해서 방송 기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 결과 1997년에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과 영어전문방송 아리랑TV가 노근리사건을 보도했다. 아리랑TV의 보도내용이 미국의 CNN 방송에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1999년 9월말,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로 이어졌고, 노근리사건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 3.1.3. 노근리사건 관련 문서증거자료 확보 및 연구논문 발표

노근리대책위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전쟁관련 미군 전사자료, 북한 문서자료, 한국국방부 전사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문서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노근리대책위 정구도 대변인은 1994년 7월 말경, 한국전쟁 당시 발행되고 있었던 북한신문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등에서 노근리 학살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sup>11)</sup>. 이렇게 새로운 문서자료들이 찾아질 때마다 내외신 기관들에 계속 제공하여 노근리사건의 이슈화에 활용하였고, 한미 양국에 보내는 진정서와 청원서에 첨부하여 증거자료로도 사용했다.

노근리대책위 정 대변인은 수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문서자료를 가지고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최병수 교수와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1999년 1월, 노근리사건에 대한 최초의 역사학논문을 발표했다<sup>12)</sup>. 그 후에는 정대변인이 충남대학과 법학과 이재곤 교수 등과 노근리사건을 저질은 참전미군이 전쟁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국제법적 기준에서 검토한 국제법 논문을 발표했다<sup>13)</sup>.

10) 한겨레신문(1994.5.4. 충청판, 1994.7.21. 서울판)이 보도했고, 그 이후에 한국일보(1994.6.1) 경향신문(1994.7.6) 주간지 '주간조선' (1994.6.30)이 정은용 위원장의 책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외신으로는 AP통신 1994년 7월 7일, 처음으로 노근리사건을 다루었다.

11) 이 기사는 노근리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 노근리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측 종군기자 친목이 5단기사로 노근리 학살사건 현장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의 원문은 미군이 한국전쟁 중 노획해서 본국으로 보내 현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 중에 있다.

12) 논문제목은 6. 25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 노근리의 미군 대 양민 집단 살상사건을 중심으로--이며 AP통신 특종보도 8개월 전인 1999년 1월, 충북대 "인문학지(人文學志)"에 게재되었다.

13) 이재곤, 정구도, 오윤석,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한국전쟁시 소위 '충북 영동군 활간면 노근리 민간인 살상사건' 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2

노근리사건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노근리대책위는 노근리사건에 대해 종합적 연구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정부의 진상조사과정에서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축소?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건해결을 돋기 위해서였다. 2001년 2월, 대책위는 국내외 유명교수 등 전문가들로 노근리사건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국내외 6개 전공분야 유명학자들에게 노근리사건에 관해서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사회학, 언론학,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의뢰하고 그동안 발표되었던 국내외 연구논문들을 모아 2001년 12월말에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이라는 논문집을 출간했다. 이어서 정대변인은 2002년 12월, 노근리사건에 대한 영어 논문집도 출간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관한 현안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과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노근리에서 배향리까지’라는 책을 공동 출간하고 끝이어 일어판도 출간하였다.

2000년 12월 4일, 대책위는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국회의원 : 황우여 의원)과 공동으로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 해결방향”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sup>14)</sup>. 이 같은 활동들을 통해 노근리사건의 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연구가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2005년 1월, 미국 하바드대학 출신 Sahr Conway-Lanz씨는 역사전공학자가 저명잡지에 논문을 기고하였고, 2005년 6월에는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마쓰무라 다카오(松村高大)교수가 ‘조선전쟁하, 노근리학살사건의 진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미국의 템플대의 언론학 전공자인 최수희 씨는 노근리사건을 주제로 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sup>15)</sup>.

### 3.1.4. 국회를 활용한 진상규명활동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2000년 7월 초, 노근리대책위 임원들은 심규철 의원을 방문하여 노근리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심규철 의원은 국회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 7월 7일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의안번호: 160065)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0년 7월 8일, 동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동 결의안의 채택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책위는 심규철 의원을 재차 방문하여 거듭 협조를 부탁하였고, 2000년 9월 29일, 동 결의안의 채택을 촉구하는 청원서(청원번호: 160076)를 국회에 제출하였다<sup>16)</sup>. 같은 해 12월 국방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2000년 12월 5일, 국방위원회에서는 노근리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고, 노근리사건 공동조사 결과 발표 한 달 전인 200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sup>17)</sup>.

14) 이 심포지움에서 속명여대 교수인 이만열 교수(한국사학전공), 서울대 정진성 교수(사회학전공), 성신여대 조시현 교수(국제법전공), 연세대 박선원 박사(국제정치학전공) 등이 노근리사건에 관한 각 분야별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15) Sahr Conway-Lanz씨는 ‘Beyond The No Gun Ri : Refugees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in the Korean War’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고, 일본 게이오대의 마쓰무라 다카오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世界’라는 저널 2005년 6월호에 게재하였다. 최수희씨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The Korea War Caught in History & Memory : Examining U.S. Media Coverage of the No Gun Ri Incident(1999-Present) and Korean Survivors Testimonies’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노근리사건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은 여러 편 발표되었으나 박사학위 논문은 최수희씨가 처음이다. 노근리대책위에서는 마쓰무라 다카오씨와 최수희씨에게 노근리사건 관련자로 제공된 생존피해자 인터뷰를 해주어 연구를 적극 지원했다.

16) 이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청원서는 대책위의 정은용 위원장이 김원웅, 심규철, 조웅규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접수되었다.

2000년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책위 정구도 대변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여 노근리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결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10월 19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가 지연되는 것을 추궁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추궁했다<sup>18)</sup>.

노근리대책위는 주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에게 각종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일을 계속했다<sup>19)</sup>. 노근리대책위의 이러한 활동들은 향후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활동으로 이어졌다.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은 각각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와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양국보고서는 노근리사건의 발생장소, 발생기간, 가해부대, 사건의 전개과정은 피해자가 주장과 일치했지만 핵심진상인 공중폭격여부와 사격명령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이에 노근리대책위는 한국 양국정부보고서와 공동발표문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 왜곡했다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이후 노근리대책위정은용 위원장은 한국정부 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2001년 4월 20일, 한국정부진상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를 국방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2001년 10월 26일자로 대책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노근리대책위는 2002년 4월 15일자로 재반론서를 그리고 4월 30일자로 한미공동발표문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서를 국방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2002년 6월 11일자로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장기간 동안 한미양국 공동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결론을 내린 공동발표문과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공동발표문과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있으며, 위원장님의 공동발표문 반론 및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 재반론에 대하여 공동발표 및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와 다른 견해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노근리대책위는 2001년 1월, 정부가 노근리사건 조사를 발표한 이후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 사후처리문제를 총괄했던 국무조정실에게 영동군청에서 신고를 받아놓은 피해신고자(248명)에 대한 피해사실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sup>20)</sup>.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노근리대책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노근리사건대책단과 조사단을 해체해버렸다. 그리고 노근리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자심사를 3년여 간 방치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약속한 추모사업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2001년 1월 12일, 노근리사

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

‘노근리사건해결촉구결의안’ 내용은 “① 미국정부는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② 미국정부는 진상조사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③ 우리 국회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되는 사안에 협조할 것이며, 이 문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등 3개항으로 되어있다.

18) 2000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속기록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0월 19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험진출 의원은 한·미 양국에 노근리사건 진상조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루영 의원은 한·미 양국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노근리사건 진상조사결과 및 발표시점을 늦추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미국 측 입장은 대체 반영함으로써 ‘짜맞추기식 조사’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노근리사건 조사성이 4월 작성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노근리사건 조사결과·증간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9) 노근리사건 회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회생자심사보고서’, 2006년 3월, 195~196쪽, 201~206쪽.

20) 노근리사건 대책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었는데 대책단은 행정자치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노근리사건 피해신고 안내문’을 게재(관보 제14337호, 1999년 10월 23일)하여 피해자신고를 받았었다.

전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미국정부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건의 희생자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의 설립과 추모비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제시했던 추모사업방안을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한 추모사업 방안이었기에 추모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2002년 11월, 노근리대책위는 한국국회를 상대로 노근리사건 진상재조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 2월 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와 추모탑 건립 등 추모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sup>21)</sup>. 그러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강력반대로 인해 진상 재조사와 손해배상조항 등의 핵심조항이 노근리특별법에서 빠지는 바람에 정확한 진상을 재조사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노근리대책위의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들은 한미정부가 각각 노근리대책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진상조사작업에 착수하도록 한 사회적 압력이 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감시자의 역할도 되었다. 또한 노근리대책위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다른 유사한 양민학살문제도 새롭게 제기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 3.2. 한·미 양국정부의 진상조사활동성과

한미 양국정부는 1999년 9월말 AP통신 보도로 국내외 여론이 비등하자 1999년 10월부터 15개월 동안 공동조사형식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1월 12일, 각각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양국의 보고서는 노근리사건의 실존을 확인하고 있으나, 진상규명의 핵심 부분인 피난민들에 대한 공중공격의 의도성과 미 지상군의 사격명령하달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양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2.1. 한국정부 진상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노근리사건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사건의 원인, 주요 쟁점별 상황해석 등을 종합함으로써, 국방부 조사반은 노근리사건이 "절박한 한국전쟁 초기의 수세적인 전투상황 하에서 북한군의 강요에 의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철수 중이던 미군이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 사이 노근리 철로 및 쌍굴 지역에서 피난민을 통제하던 중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규정했다.

21) 미국정부가 제시한 추모비의 비문의 문구와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비문이 아니라 '한국전쟁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사망한 모든 민간인' (All Korean civilians who suffered and died during the Korean War)을 추모비문안으로 제안하였으나,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은 다른 유사사건들에 대해 미국정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태이기 때문에 이를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노근리사건으로 한정하여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22) 노근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령들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법률 제7175호, 2004년 3월 5일 공포),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4호, 2004년 6월 29일 제정), 동법 시행세칙(위원회 의결 제1호, 2004년 9월 20일 제정) 및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충적사무처 리규칙(대법원규칙 제1890호, 2004년 6월 1일 제정)이 있다.

1950년 7월 26일, 노근리 지역에서의 피난민에 대한 공중공격은 피해자들의 증언 이외에 직접적인 문헌상의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여타 작전기록으로 미루어 이날 공중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중공격이 미 지상군의 요청에 의한 것 이었는지의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쌍굴에 집결한 피난민들에 대한 사격과 관련 지휘계통에 의한 사격명령의 존재 여부 역시 사격명령에 대한 증언자들의 증언 불일치로 인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노근리사건에 의해 발생한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정확하고 완벽한 수를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작전상황 상, 7월 26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대전, 영동으로부터 남하한 많은 수의 피난민들이 주곡/임계리 피난민과 합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피해자신고를 바탕으로 한 인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사상자 검증작업이 있기 전까지는 조사반은 피해자들이 노근리사건에 의해 사망, 부상, 실종되었다고 신고된 248명을 우선 잠정적인 사망자수로 고려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사상자 수를 계산한 바에 의해 조사반은 사망 170-190명 선, 부상 51명 선으로 잠정적인 사상자 인원을 산출하였으나 이 수치는 보다 정밀한 검증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2.2. 미국정부 진상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

미국정부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No Gun Ri Review)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50년 7월 노근리에서 '수 미상' (unknown number)의 한국인 피난민들이 미군의 공중폭격과 지상공격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따라서 미군에 의한 피난민 살상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2) 공중폭격의 경우 당시 미군조종사들이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미국의 공식명령지휘체계의 개입이 없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다.
- 3) 지상군의 경우 일부 부대에서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격지침을 내렸다는 문서는 있으나 다른 부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고, 증언자들의 증언 불일치로 사격명령하달 여부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 이상 일선 참전미군들에게 책임을 지워서도 안 된다.

### 3.3. 국내외 언론기관들에 의한 대표적 진상규명활동 성과

#### 3.3.1. 월간 '말' 지의 노근리사건 진상에 대한 상세보도

노근리사건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가 출간된 이후 노근리대책위의 취재부탁을

받은 월간 '말' 지 오 연호 기자가 노근리사건을 취재했다. 오기자는 노근리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을 취재하여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 3.3.2. AP통신 : 가해미군과 아카이브문서들을 취재하여 노근리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규명

1) 1998년 4월부터 AP통신 취재팀이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팀은 노근리대책위에서 제공한 실화소설, 연구논문, 미국 아카이브 문서 등 각종 증거문서들,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취재에 임했다. 이에 더해 AP통신 취재팀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문서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전쟁 참전미군들의 증언들을 취재해서 1999년 9월 말, 노근리대책위가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보도를 통해 노근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했다.

2) AP통신 취재팀은 1999년 9월 보도 이후 2006년 5월 '말에' 보도된 무초대사 문건에 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7년 가까이 '노근리사건은 미군 고위층으로부터 피난민들에 대한 사격명령이나 지침이 있어서 미군이 의도적으로 사격을 가해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존 무초대사가 작성했던 소위 '무초대사 문건'은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노근리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상 재조사가 필요함을 확인해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뒤에 기술하였음)

### 3.3.3. 문화방송 : 군사전문가와 가해미군들을 취재하여 노근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1997년 시사매거진 2580의 전동건 기자가 노근리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을 취재하여 방송으로는 최초로 노근리사건을 취재보도하였다. AP통신 보도 직후인 1999년 11월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연출 홍상운 PD)가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가해미군들과 군사전문가를 취재해서 노근리사건의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한 보도를 한 바 있다.

### 3.3.4. 영국 BBC방송 : 미 국방부 조사보고서의 진상축소문제에 대한 추적보도

2001년 1월, 한미 양국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국내언론들은 노근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식었으나 영국 BBC방송은 노근리문제를 1년가까이 심층취재하여 보도했다. BBC가 방영한 'Kill em All'이라는 프로그램은 노근리사건에 관련된 참전미군의 증언, 진상조사를 지휘한 미 국방부 고위관료를 취재하여 미 국방부 진상보고서가 핵심진상을 축소·왜곡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도했다.

### 3.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규명 성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특별법에 근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만 이 위원회에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규명에 관련해서 수행가능한 일은 희생자여부를 심사하는 것만 가능하다.

노근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6일부터 3개월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 23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를 하여 218명을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2,170명을 유족으로 결정하고, 21건을 호적등재(정정)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sup>23)</sup>. 이는 한미양국의 공동조사 시에 실시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 사상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희생자 유해발굴예산이 확보되어 2007년도에 노근리사건 현장 주변의 희생자 유해가 발굴된다면 희생자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4.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관련 문제점과 과제

### 4.1. 노근리사건 진상관련 문제점

#### 4.1.1. 한미 양국 정부보고서의 진상 축소·왜곡

1999년 10월, 한미양국이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며 공동조사를 표방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각각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해서 자료를 제한적으로 교환하는 조사방식을 취하였고, 조사보고서는 단일조사보고서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염밀히 볼 때 공동조사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한국조사반은 노근리사건이 미군작전지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아카이브문서와 참전미군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 측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2000년 한미양국이 노근리사건 조사 시에 미국정부는 무초대사문건 말고도 한국정부조사단이 요청한 핵심문서를 35건(2000년 9월 30일 현재)<sup>24)</sup>을 이런 저런 이유로 건네주지 않아 정확한 진상조사를 방해했다. 또 미국은 노근리사건이 AP통신에 의해 폭로된 직후인 1999년 말부터 미 국립문서보고서에서 비밀해제되었던 문서를 기밀문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50년 한국에 있던 미군사병들과 미군부대들에 대한 것도 비밀문서로 재분류했다<sup>25)</sup>.

23) 노근리사건특별법에 의거 2004년도에 한국정부에 공식 접수된 사상자수는 235명(사망 185명, 행방불명 18명, 부상 32명)이었다. 사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나 무연고 희생자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희생자심사 시 법률적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으며, 2004년 피해자 신고 당시 신고가 누락된 사람도 10명이 넘어 재 신고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노근리사건 발생 직후 조선인민보의 전독이라는 기자가 보도한 노근리사건 기사를 보면 사망자가 4000명에 이른다는 기사도 있어서 실제 사건희생자는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24) 한국 노근리사건 진상조사반 "한미간 자료교환현황", 2000. 9. 30. 현재  
25) 연합뉴스, "1950년 한국전때 미군자료 비밀로 재분류", 2006년 2.28.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노근리사건의 파장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 했다. 이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정부는 처음에는 미군에 의한 다른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향을 비치다가 이 입장을 철회하고 2001년 1월, 노근리사건만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노근리사건이외에 다른 유사사건으로 불똥이 트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쪽 노근리사건대책단장인 루이스 칼데라 육군성장관은 조사가 한창이던 2000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포한 병사들은 증언 여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아예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에서 면죄돼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미국이 왜 갑자기 형사처벌 얘기를 들고 나왔을까? 당시의 진상을 알고 있는 참전군인들에 대해 말조심하라는 협박이었다. 그의 발언이 있은 뒤 참전군인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등 보도 직후에 형성된 고백의 분위기는 얼어붙어버렸다. 그리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world & report지 등 일부 언론은 보도의 허점이나 실수를 파고들었다. 국내에서도 크게 보도됐던 에드워드 데일리라는 참전 군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기관총을 쏜 듯이 증언했으나实은 옆 부대 소속이었다. 그러나 데일리 이외에 핵심적인 증언자들이 25명 정도였기 때문에 보도의 본질, 나아가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2000년 10월, 조사종결 직전 한미양국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시에 주미 한국대사였던 양○○대사는 “미군 지휘관들이 사살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피해자의 보상을 포함한 법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한다는 대사의 발언이 이럴진대,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미국정부는 노근리 사건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겁에 질리고 혼란에 빠진 병사들이 상부의 명령 없이 피난민들에게 발포한 ‘불행한 비극’으로 ‘비계획적인 살상’ 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주장에 대부분 동의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한·미 공동발표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한국 정부보고서 역시 진상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미국보고서처럼 노근리사건을 학살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실한 보고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은 각각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와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책위는 한국 양국정부보고서와 공동발표문에 사건의 진상을 축소, 왜곡시킨 부분이 많아서 즉각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노근리 양민학살이 미군의 명령체계 틀 속에서 나온 조직적 양민학살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양국정부는 전쟁 수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근리대책위 정은용 위원장은 한국정부 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2001년 4월 20일, 한국정부진상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를 국방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2001년 10월 26일자로 노근리대책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노근리대책위는 2002년 4월 15일자로 재반론서를 그리고 4월 30일자로 한미

공동발표문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서를 국방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2002년 6월 11일자로 “노근리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장기간 동안 한미양국 공동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결론을 내린 공동발표문과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공동발표문과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있으며, 위원장님의 공동발표문 반론 및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 재반론에 대하여 공동발표 및 한측의 조사결과보고서와 다른 견해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2002년 2월, 영국 BBC방송이 노근리사건 관련 참전 가해미군, 생존피해자, 진상조사를 지휘했던 미국정부의 고위관료 등을 취재하여 미국방부 진상보고서가 핵심진상을 왜곡 축소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있었다.

이 밖에 AP통신은 금년 5월 29일, 한국전쟁 초기 주한 미 대사로 있었던 존 무초대사가 미국무부로 보고한 피난민정책 관련 문서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에서 발굴해서 보도했다. 이른바 ‘무초서한’은 노근리 학살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인데 이 서한에는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 (피난민들은)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피난민 통제방침은 노근리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950년 7월 25일 대구에서 미8군이 소집한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이 회의 내용을 당시 주한미 대사이던 존 무초대사가 본국에 보고하였으며 회의 다음날인 7월 26일 노근리학살로 이어졌다. 이 무초서한은 한국전쟁 당시 모든 미군에게 피란민에 대해 총격을 하라는 정책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미 행정부 고위층도 그러한 정책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그런데 무초서한에 관한 내용이 미국방부 보고서에 빠져있고, 한국 정부조사반에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 무초서한은 노근리 학살이 북한군이 피란민 대열을 통해 침투하는 것을 우려해 미 8군이 결정해서 집행했던 당시 다른 피난민 통제정책들과도 일맥상통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서한은 82년 비밀 해제된 문서인데, 미 역사학자 사르 콘웨이 랜츠(Sahr Conway-Lanz)가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했다. Lanz씨는 노근리사건 당시 미군 고위층의 사격명령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정리한 미 국방부 노근리사건 진상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사학 논문을 발표했고<sup>26)</sup>, 최근에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제목의 단행본도 출간해서 미 국방부 노근리보고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AP통신은 취재결과 무초서한 이외에도 지난 50-51년 미군지휘관의 발포명령이 담긴 비밀해제 문서 19건을 확보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부의 사격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한 참전미군이 25명에 이른다고 밝혀서 노근리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보도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무초 서한이 2001년 미 국방부조사보고서에 왜 반영이 안되었지에 대해 미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고 미 측은 지난 9월 말,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26) 하바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Sahr Conway-Lanz라는 학자가 *Diplomatic History*라는 저널 2005년 1월호에 ‘Beyond The No Gun Ri : Refugees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in the Korean War’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